

2025년 귀속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



국세청
National Tax Service

2025년 귀속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



Contents

- 01 근로와 세금
- 02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할 서류
- 03 연말정산 관련 용어
- 04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개요
- 05 근로자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 06 회사의 연말정산 유형에 따른 공제자료 제출 방법
- 07 연말정산 세액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 08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요건
- 09 주요 소득공제와 세액감면·공제가 어떤 것이 있나요?
- 10 연말정산 결과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 11 소득·세액공제를 누락한 경우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 12 연말정산 시 절세 Tip은?
- 13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시 유의할 사항은?
- 14 더 궁금한 연말정산! 어디서 해결하나요?



2025년												2026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49,340	49,340	49,340	49,340	49,340	49,340	49,340	49,340	49,340	49,340	49,340	49,340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매월 근로소득세액 납부 (연간 242,160원 납부)												연말정산 후 결정세액 200,000원	
예시) 월 급여액 350만원(본인, 배우자, 8세이상 20세 이하 자녀 2명) :원천징수세액은 49,340원-29,160원=20,180원(지방소득세 2,018원 별도) → 8세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1명인 경우: 12,500원 → 8세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2명인 경우: 29,160원 → 8세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3명인 경우: 29,160원+2명 초과 자녀 1명당 25,000원												42,160원 환급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세를 어떤 기준으로 징수하여 납부하나요?

-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합니다. 간이세액표는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해야 하는 세액을 급여수준 및 공제대상 가족수별로 계산하여 산정한 표입니다.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회 : 홈택스(www.hometax.go.kr) → 세금신고 → 원천세 신고 → 근로소득간이세액표

매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를 선택할 수는 없나요?

- ▶ 연말정산 결과 환급금 및 추가납부액의 규모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매월 납부할 소득세를 간이세액표 금액의 80%, 100%, 120%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선택이 없을 경우 100% 적용)

☞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작성하거나「소득·세액 공제 신고서」에 기재하여 회사에 신청

연말정산은?

- ▶ 근로자가 올해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로서,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다음 연도 2월분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매월 급여 지급시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이 세법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한 연간 근로소득세액 보다 많은 경우 많이 낸 세금은 돌려주고, 적게 낸 경우에는 추가 납부합니다.

연말정산 후 환급세액 또는 추가납부세액 발생 사유

- ▶ 연말정산 시 근로자가 제출한 서류 등에 의해 인적공제 대상 부양가족과 소득·세액공제 금액이 정확히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중도퇴직자 및 이종 근로자 연말정산

- ▶ 12월 말 최종 근무지에서 전(종)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전(종)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 징수부사본을 발급받아 현(주)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2023년 8월부터 퇴사한 근로자의 지급명세서의 상시 제출이 가능하여 연도 중 홈택스로 지급명세서가 제출된 경우 연말정산 시 퇴사한 근로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수동 발급하지 않아도 근로자 본인이 제출된 다음날 홈택스에서 조회/출력 가능하므로 원활한 연말정산을 위해 퇴사자의 지급명세서를 연도 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제출 대상자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미확인 시 '가족관계증명서')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받는 근로자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간소화 자료 및 영수증 수집 자료)		연말정산을 하는 모든 근로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연말정산을 하는 모든 근로자
소득 · 세액 공제 신고서 부속 서류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퇴직연금·연금저축 세액공제, 주택마련 저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자
	월세액·거주자간 주택 임차차임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월세액 및 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임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는 근로자
	의료비지급명세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는 근로자
	장애인 증명서 등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이 중증질환, 희귀난 치성 질환 또는 이와 유사한 질병·부상으로 인해 중단 없이 주기적인 치료를 요하는 자
	기부금명세서(기부금영수증)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는 근로자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자
	출산지원금 비과세 적용 명세서	회사에서 출산지원금을 받은 근로자
전(중) 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중도 퇴직자 또는 2이상 회사의 근무자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및 해당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자 본인에 대한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및 표준세액공제 (13만원)만 적용

연말정산 기초서류인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어디서 수집하나요?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수집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간소화로 제출되지 않은 자료의 경우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증명서류를 수집해야 합니다.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개통 : '26.1.15.부터 서비스 가능

☞ 연말정산간소화[홈택스(www.hometax.go.kr)]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홈택스의 「편리한 연말정산」을 활용하면 쉽게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부속 서류 등을 조회·출력·온라인 제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자료는 직접 입력하여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 홈택스(www.hometax.go.kr)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인터넷을 이용한 첨부서류 발급

☞ 주민등록등본 등 → 정부민원포털 정부24(www.gov.kr)

☞ 건물등기부등본 →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447/)

☞ 가족관계등록부 →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



▶ 연말정산 관련 용어정리

용어	설명																											
총급여액	○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은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총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으로 과세대상급여를 말함																											
소득공제	○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하여 과세대상소득(총급여액) 중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을 말함 -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특별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가 있음 · 특별소득공제 : 보험료, 주택자금(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 개인연금저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등																											
과세표준	○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계산됨																											
세율	<table border="1"> <thead> <tr> <th>과세표준</th> <th>세율</th> <th>산출세액 계산</th> </tr> </thead> <tbody> <tr> <td>1,400만원 이하</td> <td>6%</td> <td>과세표준 × 6%</td> </tr> <tr> <td>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td> <td>15%</td> <td>84만원 + (1,400만원 초과금액 × 15%)</td> </tr> <tr> <td>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td> <td>24%</td> <td>624만원 + (5,000만원 초과금액 × 24%)</td> </tr> <tr> <td>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td> <td>35%</td> <td>1,536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 × 35%)</td> </tr> <tr> <td>1억5천만원 초과 3억 원 이하</td> <td>38%</td> <td>3,760만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 × 38%)</td> </tr> <tr> <td>3억원 초과 5억 원 이하</td> <td>40%</td> <td>9,406만원 + (3억원 초과금액 × 40%)</td> </tr> <tr> <td>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td> <td>42%</td> <td>17,406만원 + (5억원 초과금액 × 42%)</td> </tr> <tr> <td>10억원 초과</td> <td>45%</td> <td>38,406만원 + (10억원 초과금액 × 45%)</td> </tr> </tbody> </table> <p>(예시) 과세표준 4,000만원인 경우 : 84만원 + (2,600만원 × 15%) = 4,740,000원</p>	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 계산	1,400만원 이하	6%	과세표준 × 6%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15%	84만원 + (1,400만원 초과금액 × 15%)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624만원 + (5,000만원 초과금액 × 24%)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35%	1,536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 × 35%)	1억5천만원 초과 3억 원 이하	38%	3,760만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 × 38%)	3억원 초과 5억 원 이하	40%	9,406만원 + (3억원 초과금액 × 4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2%	17,406만원 + (5억원 초과금액 × 42%)	10억원 초과	45%	38,406만원 + (10억원 초과금액 × 45%)
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 계산																										
1,400만원 이하	6%	과세표준 × 6%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15%	84만원 + (1,400만원 초과금액 × 15%)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624만원 + (5,000만원 초과금액 × 24%)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35%	1,536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 × 35%)																										
1억5천만원 초과 3억 원 이하	38%	3,760만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 × 38%)																										
3억원 초과 5억 원 이하	40%	9,406만원 + (3억원 초과금액 × 4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2%	17,406만원 + (5억원 초과금액 × 42%)																										
10억원 초과	45%	38,406만원 + (10억원 초과금액 × 45%)																										
세액공제	○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에서 세액감면을 공제한 후 특정목적에 따라 세법에서 규정한 세액만큼 공제하는 것을 말함 -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월세액 세액공제 등이 있음																											
부양가족	○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등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함(직계존속, 직계비속(입양자), 형제자매, 수급자, 위탁아동) ○ 다만,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나,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고, 직계비속·입양자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부양가족에 해당함																											



손쉽게 증명서류를 수집하는 방법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 ▶ 국세청이 증명서류 발급기관으로부터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수집, 홈택스를 통해 근로자에게 제공하여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절감
- ▶ 이용방법 :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절세 계획을 미리 수립하고자 할 때 ⇒ 연말정산 미리보기

- ▶ 매년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11월에 알려주어 연말까지 결제수단 선택 등을 통한 절세계획 수립을 도와주는 서비스
- ▶ 근로자가 빠뜨리기 쉬운 공제 항목에 대하여 공제요건 및 세제 혜택을 맞춤형 안내
- ▶ 이용방법 :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편리한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언제, 어디서나 공제항목 등을 확인하는 방법 ⇒ 모바일 연말정산

- ▶ 각종 소득·세액공제 항목에 대한 공제 요건·방법과 공제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면 「절세주머니」와 「대화형 자기검증」을 이용
- ▶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해 보고 싶은 경우 「간편계산기」와 「예상세액계산하기」를 이용
- ▶ 과거에 신고했던 연말정산 정보가 궁금하다면 「3개년 신고내역 조회」를 이용
- ▶ 간소화자료 제공동의를 간편하게 신청하려면 「자료제공동의신청」을 이용
- ▶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및 공제신고서를 모바일로 간편하게 제출

연말정산 결과를 사전에 확인하고자 할 때 ⇒ 예상세액 계산하기

- ▶ 근로자가 간소화서비스에서 선택한 공제자료 또는 이미 자동 작성된 공제 신고서를 활용하여 연말정산 예상 환급(추가납부)세액을 자동계산*
 - * 총급여액, 기납부세액 등은 근로자의 추가 입력 필요
- ▶ 이용방법 : 이용방법 : 홈택스(www.hometax.go.kr)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편리한연말정산 ⇨ 예상세액계산하기

맞벌이 근로자가 절세방법을 알고 싶은 경우 ⇒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

- ▶ 부양가족 선택 방법을 변경하여 맞벌이 부부의 세 부담 합계가 최소화 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 모의계산 기능
- ▶ 이용방법 :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편리한연말정산 ⇨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연말정산 의문점 해소 ⇒ 연말정산 도움말 자료(5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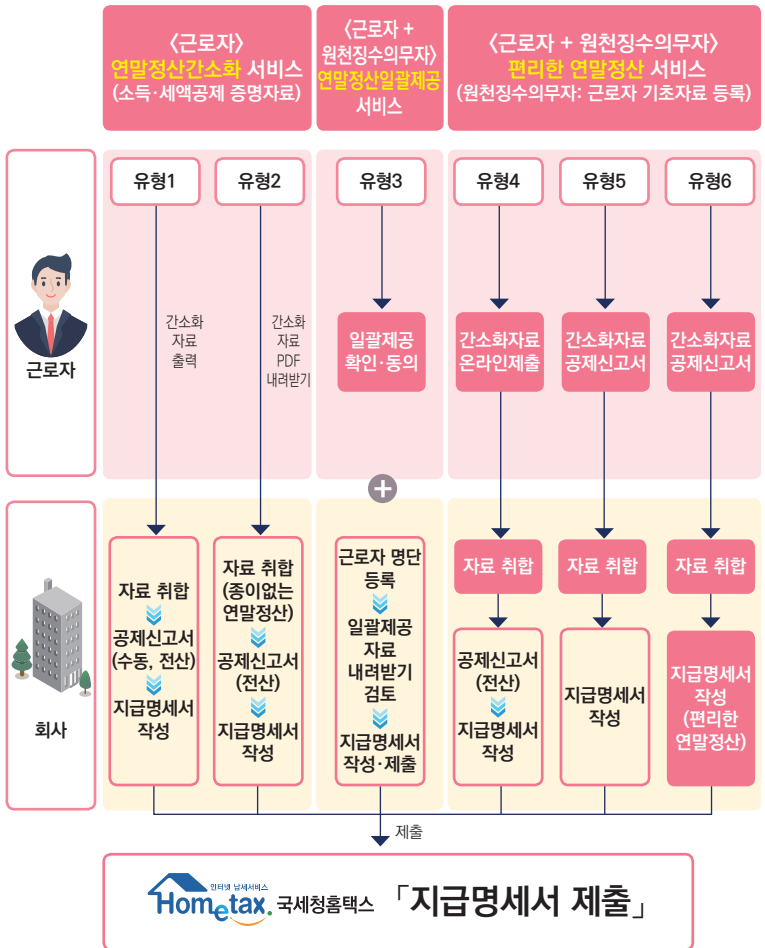
- ▶ (키워드 연말정산) 연말정산 핵심 키워드 100개를 선정하여 상세한 해설 제공
- ▶ (Q&A 모음집) 자주묻는 질문을 정리하여 책자로 제공
- ▶ (연말정산 상담 도우미) 연말정산 체계를 그림으로 보여주고, 해당 항목을 선택 하면 상세정보 제공
- ▶ (연말정산 자가 체크리스트) 공제항목에 대한 질문을 Y/N으로 대답하는 형식의 도움말 제공
- ▶ (계산사례) 계산 방식이 복잡하거나 상담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공제 항목에 대해 이해하기 쉽도록 요약 설명하고 항목별 다양한 계산 사례 제공



회사의 전산 및 업무환경 등을 고려하여 연말정산 방법을 합리적으로 선택

구분	이용대상자
유형1	(근로자) 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 증명자료를 출력하여 회사에 제출 (회 사) 공제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자체 시스템에서 작성하여 국세청에 제출
유형2	(근로자) 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 증명자료 PDF파일로 회사에 제출 (회 사) 공제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자체 시스템에서 작성하여 국세청에 제출
유형3	(근로자) 홈택스에서 일괄제공에 대한 확인·동의 (민감정보 삭제 + 부양가족 확인) (회 사) 근로자명단 등록 일괄제공 자료 내려받기, 검토 지급명세서작성·제출
유형4	(근로자)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공제 증명자료를 회사에 제출 (회 사)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자료 집계하여 자체 시스템에서 공제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국세청에 제출
유형5	(근로자)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공제신고서까지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 (회 사)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자료 집계하여 자체 시스템에서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국세청에 제출
유형6	(근로자)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공제신고서까지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 (회 사)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지급명세서까지 작성하여 국세청에 제출

※ 유형 4·5·6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가 이용 가능



※ 유형 ②, ③ : 간소화 자료를 회사의 전산 시스템에 업로드하여 예상세액 계산 가능
유형 ④, ⑤, ⑥ : 국세청 홈택스에서 예상세액 계산 가능



총급여

총급여
연봉(급여 + 상여 + 수당 + 인정상여) - 비과세소득

(-)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1명당 연 150만원 공제)

(-) 인적공제

추가공제
경로우대 · 장애인 · 부녀자 · 한부모

(-) 연금보험료공제

국민연금보험료 등 공적연금 보험료 납부액

(-) 특별소득공제

건강보험료 등, 주택자금(주택임차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 그 밖의 소득공제

(+) 소득공제
한도초과액

개인연금저축, 소기업 · 소상공인공제부금, 주택마련 저축,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우리사주조합출연금,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청년형 포함)

종합소득 과세표준

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 계산
1,400만원 이하	6%	과세표준 × 6%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15%	84만원 + (1,400만원 초과금액 × 15%)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624만원 + (5,000만원 초과금액 × 24%)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35%	1,536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 × 35%)
1억5천만원 초과 3억 원 이하	38%	3,760만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 × 38%)
3억원 초과 5억 원 이하	40%	9,406만원 + (3억원 초과금액 × 4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2%	17,406만원 + (5억원 초과금액 × 42%)
10억원 초과	45%	38,406만원 + (10억원 초과금액 × 45%)

(x) 기본세율
(6% ~ 45%)

산출세액

(-) 세액감면 및 공제

세액감면(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등)
근로소득세액공제
혼인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8세 이상 기본공제대상자녀, 출산·입양)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납세조합공제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월세액세액공제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차감징수세액



구 분		공 제 요 건				비 고
		나이요건*	소득요건*	동거요건		
				주민등록동거	일시퇴거 허용	
기본공제	본인	X	X	X		
	배우자	X	○	X		
	직계존속	60세 이상	○	△ (주거형편상 별거 허용)		1965.12.31. 이전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20세 이하	○	X		2005.01.01. 이후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	X	○	X		
	형제자매	60세 이상 20세 이하	○	○	○	1965.12.31.이전 2005.01.01. 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의한 수급자	X	○	○	○	
	위탁아동		○			6개월 이상 양육
추가공제	장 애 인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				
	경로우대	기본공제대상자 중 70세 이상인 자				1955.12.31. 이전
	부 녀 자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자)				
	한 부모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부양자녀(20세 이하)가 있는자				
연금보험료 공제		공적연금보험료의 근로자 본인 납입분만 공제 가능				

*나이요건 :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 제한 없음, 당해 과세기간 중 공제기준일이 해당하는 날이 있는 경우 적용

*소득요건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구 분		기본공제대상자의 요건		근로기간 지출한 비용만 공제	비 고
		나이요건	소득요건		
특 별 소 득 공 제	보 험 료	근로자 본인 부담분만 공제 가능(건강·노인장기요양·고용보험료)			
	주택자금공제	-	-	○	본인만 가능
그 밖 의 소 득 공 제	개인연금저축	근로자 본인 납입분만 공제 가능(배우자, 부양가족 납입분 제외)			
	주택마련저축	세대주인 근로자 본인 납입분만 공제 가능			
	신용카드 등	X	○	○	형제자매 제외
자녀세액공제		○	○	-	8세이상 기본공제대상 자녀 (입양자·위탁아동 포함) 및 손자녀
연금계좌세액공제		근로자 본인 납입분만 세액공제 가능(배우자, 부양가족 납입분 제외)			
특 별 세 액 공 제	보장성보험료	○	○	○	
	의 료 비	X	X	○	
	교 육 비	X	○	○	*장애인특수교육비는 소득요건제한 없으며, 직계존속도 가능
	기 부 금	X	○	X	기본공제대상자 (나이요건 제한 없음) *정치자금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본인만 가능
표준세액공제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표준세액공제(13만원) 적용			



인적공제

항목	구분	공제한도	공 제 요 건					
인 적 공 제	기본공제	1명당 150만원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					
			부양가족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위탁아동	수급자
	나이요건	60세 이상	20세 이하	60세 이상 20세 이하	6개월 이상 양육	없음		
			*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 제한 없음					
	추가공제	대상별 차이	공제대상	경로우대 (70세 이상)	장애인	부녀자 (부양/기혼)	한부모	
공제금액			100만원	200만원	50만원	100만원		
			* 한부모 공제는 부녀자공제와 중복적용 배제(중복시 한부모 공제적용)					

연금보험료 및 특별소득공제

항목	구분	공제한도	공 제 요 건	
연금 보험료	공적연금 보험료	전 액	본인이 부담한 국민연금 또는 공무원연금 등 지역연금 보험료	
	건강·고용 보험료	전 액	본인 명의의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및 고용 보험료	
특 별 소 득 공 제	주택 자금	주택 임차 차입금	연 400만원 한도	무주택 세대주의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 공제 ※주택마련저축 공제와 합하여 연 400만원 한도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	연 600만원 ~ 2,000만원 한도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주의 상환기간 15년 이상의 장기 주택 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을 100% 공제
			차입시기	공제한도
			'12.1.1. 이후	·상환기간 15년 이상 & 비거차식 & 고정금리 : 2,000만원 ·상환기간 15년 이상 & (비거차식 or 고정금리) : 1,800만원 ·상환기간 15년 이상 & 기타 : 800만원 ·상환기간 10년 이상 & (비거차식 or 고정금리) : 600만원
			'11.12.31. 이전	·상환기간 15년 이상 & 비거차식 & 고정금리 : 2,000만원 ·상환기간 15년 이상 & (비거차식 or 고정금리) : 1,800만원 ·상환기간 30년 이상 & 기타 : 1,500만원 ·상환기간 15년~29년 & 기타 : 1,000만원 ·상환기간 15년 미만 & 기타 : 600만원

그 밖의 소득공제

항목	구분	공제한도	공 제 요 건	
그 밖 의 소 득 공 제	개인연금 저축	연 72만원 한도	개인연금저축('00.12.31 이전 가입)의 경우 납입액의 40% 공제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	200만원 400만원 500만원 600만원	총급여액 8천만원 이하 법인 대표자가 노란우산공제에 납입한 금액	
			사업(근로)소득금액	공제한도
			4천만원 이하	600만원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500만원	
6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400만원			
1억원 초과	200만원			
	주택마련 저축	연 120만원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와 합하여 연 400만원 한도)	무주택 세대주 및 배우자로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 자가 주택 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등에 납입한 금액(연간 300만원 한도)의 40% 공제	



항목	구분	공제한도	공제요건														
그 밖의 소득공제	투자조합 출자 등	근로소득금액의 50% (조특법 제16조제1항제2호 벤처투자신탁 소득공제 금액은 300만원 한도)	벤처투자조합 등의 출자·투자금액의 10% (100%, 70%, 30%)* 공제 * 벤처기업 등에 직접투자(3천만원 이하분 100%, 5천만원 이하분 70%, 5천만원 초과분 30%)														
	신용카드	[공제 한도]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합계액 중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40%를 소득공제														
		총급여액		한도													
		7천만원 이하		300만원													
	7천만원 초과	250만원	<table border="1"> <thead> <tr> <th>결제수단 및 사용처별</th> <th>공제율</th> </tr> </thead> <tbody> <tr> <td>신용카드</td> <td>15%</td> </tr> <tr> <td>직불·선불카드</td> <td>30%</td> </tr> <tr> <td>현금영수증</td> <td>30%</td> </tr> <tr> <td>도서·신문·영화관람료·수영장*·체육단련장* 등</td> <td>30%</td> </tr> <tr> <td>전통시장</td> <td>40%</td> </tr> <tr> <td>대중교통</td> <td>40%</td> </tr> </tbody> </table>	결제수단 및 사용처별	공제율	신용카드	15%	직불·선불카드	30%	현금영수증	30%	도서·신문·영화관람료·수영장*·체육단련장* 등	30%	전통시장	40%	대중교통	40%
	결제수단 및 사용처별	공제율															
	신용카드	15%															
직불·선불카드	30%																
현금영수증	30%																
도서·신문·영화관람료·수영장*·체육단련장* 등	30%																
전통시장	40%																
대중교통	40%																
[추가공제]	[추가공제]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체육 등을 합하여 300만원 추가공제(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200만원)																	
우리사주 조합 출연금	연 400만원 한도 (벤처 1,500만원)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해 우리사주 조합에 출연한 금액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연 1,000만원 한도	고용유지 중소기업의 근로자 임금삭감액의 50% 공제															
장기집합 투자증권 저축	연 240만원 한도	총급여액 8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액(연 600만원 한도)의 40%를 공제															
청년형 장기 집합투자 증권저축	연 240만원 한도	총급여액 8천만원(종합소득금액 6,700만원)이하인 거주자의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액(연 600만원 한도)의 40%를 공제															
소득공제 종합한도	연 2,500만원 한도	주택자금,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주택마련저축,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신용카드 등, 투자조합출자 등(조특법제16조제1항제3호, 4호 및 제6호 제외), 장기집합투자 증권저축이 소득공제 종합한도 대상															

세액감면

항목	구분	공제한도	공제요건																									
세액감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연 200만원	감면 대상자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요건</th> </tr> </thead> <tbody> <tr> <td>청년</td> <td>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34세 이하인 자</td> </tr> <tr> <td>고령자</td> <td>60세 이상인 자</td> </tr> <tr> <td>장애인</td> <td>1.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3. 5.18민중화운동 부상자 4. 고엽제 후유증 등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td> </tr> <tr> <td>경력단절 근로자</td> <td>1. 임금을 목적으로 같은 기업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 2. 결혼·임신·출산·육아·차녀교육·가족돌봄의 사유로 퇴직 3. 퇴직한 날부터 2~15년 미만의 기간의 기간이 지났을 것 4.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등의 특수관계인 제외</td> </tr> </tbody> </table>	구분	요건	청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34세 이하인 자	고령자	60세 이상인 자	장애인	1.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3. 5.18민중화운동 부상자 4. 고엽제 후유증 등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경력단절 근로자	1. 임금을 목적으로 같은 기업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 2. 결혼·임신·출산·육아·차녀교육·가족돌봄의 사유로 퇴직 3. 퇴직한 날부터 2~15년 미만의 기간의 기간이 지났을 것 4.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등의 특수관계인 제외															
			구분	요건																								
			청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34세 이하인 자																								
			고령자	60세 이상인 자																								
			장애인	1.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3. 5.18민중화운동 부상자 4. 고엽제 후유증 등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경력단절 근로자	1. 임금을 목적으로 같은 기업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 2. 결혼·임신·출산·육아·차녀교육·가족돌봄의 사유로 퇴직 3. 퇴직한 날부터 2~15년 미만의 기간의 기간이 지났을 것 4.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등의 특수관계인 제외																								
			감면율 및 한도 <table border="1"> <thead> <tr> <th>감면 대상자</th> <th>소득발생 시점</th> <th>감면율</th> <th>감면한도</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청년</td> <td>2023.1.1. ~ 2026.12.31.</td> <td>90%</td> <td>200만원</td> </tr> <tr> <td>2018.1.1. ~ 2022.12.31.</td> <td>90%</td> <td>150만원</td> </tr> <tr> <td>2016.1.1. ~ 2017.12.31.</td> <td>70%</td> <td>150만원</td> </tr> <tr> <td rowspan="2">60세 이상자·장애인</td> <td>2023.1.1. ~ 2026.12.31.</td> <td>70%</td> <td>200만원</td> </tr> <tr> <td>2016.1.1. ~ 2022.12.31.</td> <td>70%</td> <td>150만원</td> </tr> <tr> <td>경력단절 근로자</td> <td>2025.3.14. ~ 2026.12.31.</td> <td>70%</td> <td>200만원</td> </tr> </tbody> </table>	감면 대상자	소득발생 시점	감면율	감면한도	청년	2023.1.1. ~ 2026.12.31.	90%	200만원	2018.1.1. ~ 2022.12.31.	90%	150만원	2016.1.1. ~ 2017.12.31.	70%	150만원	60세 이상자·장애인	2023.1.1. ~ 2026.12.31.	70%	200만원	2016.1.1. ~ 2022.12.31.	70%	150만원	경력단절 근로자	2025.3.14. ~ 2026.12.31.	70%	200만원
			감면 대상자	소득발생 시점	감면율	감면한도																						
			청년	2023.1.1. ~ 2026.12.31.	90%	200만원																						
				2018.1.1. ~ 2022.12.31.	90%	150만원																						
2016.1.1. ~ 2017.12.31.	70%	150만원																										
60세 이상자·장애인	2023.1.1. ~ 2026.12.31.	70%	200만원																									
	2016.1.1. ~ 2022.12.31.	70%	150만원																									
경력단절 근로자	2025.3.14. ~ 2026.12.31.	70%	200만원																									
※ '25.3.14. 이후 경력단절 여성 → 경력단절 근로자로 대상자 확대																												

세액공제

항목	구분	공제한도	공제요건
세액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	총급여액 기준 20·50·66·74 만원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분 55%, 130만원 초과분 30% 공제 ※ 공제한도 : 총급여액 3,300만원 이하(74만원)·7천만원 이하(66만원)·1억2천만원 이하(50만원)·그 외 20만원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세액공제 계산 = 근로소득세액공제 × [1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액/산출세액)]



항목	구분	공제한도	공제요건		
자녀	혼인세액공제	1명당 50만원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가 혼인신고를 한 해(생애 1회)에 50만원을 해당 과세기간에 공제 * '24년부터 '26년까지의 기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		
	기본공제대상	전액	기본공제대상(8세 이상)자녀가 1명일 때 25만원, 2명일 때 55만원, 3명이상일 때 2명 초과하는 1명당 40만원		
	출산·입양	전액	기본공제대상 자녀 중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입양한 자녀가 첫째인 경우 30만원, 둘째인 경우 50만원, 셋째 이상인 경우 70만원		
연금계좌	한도내 전액	퇴직연금·연금저축 납입액의 12% 세액공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 100분의 10(연 3백만원 한도)에 해당금액의 12% 세액공제(총급여액 55백만원 이하는 15%)			
		종합소득금액(총급여액)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퇴직연금 포함)	공제율	
		45백만원(55백만원) 이하	600만원	15%	
		45백만원(55백만원) 초과	900만원	12%	
세액공제	보험료	보장성	연 12만원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지출한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납입액(연간 1백만원 한도)의 12%	
		장애인 전용 보장성	연 15만원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지출한 장애인 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료 납입액(연간 1백만원 한도)의 15%	
	의료비	① 본인 등	전액	의료비 지출액이 총급여액 3%를 초과하는 경우 그 공제대상금액의 15% (난임시술비는 30%,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20%) ※ 공제대상금액 한도 : 본인 등*(전액), 부양가족(연 700만원) * 본인 등 : 본인, 65세 이상자, 6세 이하자, 장애인,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건강보험 산정특례자, 난임시술비	
		② 부양가족	105만원 전액		
	교육비	취학전 아동	1명당 45만원	교육비 지출액의 15% 세액공제	보육비용, 유치원비, 학원·체육시설 수강료, 방과후 수업료(교재대 포함, 재료비 제외), 급식비 : 1명당 300만원 한도
		초·중·고생		나이제한 없음 (직계존속은 제외)	교육비, 학교급식비, 교과서대, 방과후학교 수강료(교재대 포함, 재료비 제외), 국외교육비(국외유학 요건 충족 : 고등학생제외), 대학입학전형료, 수능 응시료, 교복구입비(중·고생 50만원 이내), 현장 체험학습비(30만원 한도) : 1명당 300만원 한도
		대학생	1명당 135만원	교육비(사이버 대학 및 학위취득과정 포함), 국외 교육비 : 1명당 900만원	
		근로자 본인	전액	대학·대학원 1학기 이상의 교육과정 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장애인 특수 교육비	전액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해 지급하는 비용 * 소득금액 제한 없으며, 직계존속도 공제 가능		
	기부금	정치자금	10만원 이하	※ 공제대상 한도 근로 소득금액 100%	기부금액 100/110 세액공제
		고향사랑	10만원 초과		기부금액의 15% 세액공제(3천만원 초과분 25%)
		특례	한도내 전액	2,000만원	기부금액의 100/110 세액공제
근로소득금액 100%				기부금액의 15% 세액공제(특별재난지역은 30%)	
우리 사주		1천만원 이하 15%, 1천만원 초과 30%	근로소득금액 30%		
일반(종교외)		1천만원 이하 15%, 1천만원 초과 30%	근로소득금액 30%		
일반(종교)		1천만원 이하 15%, 1천만원 초과 30%	근로소득금액 10%		
표준세액공제	연 13만원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 특별소득공제 등 공제세액이 연 13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도 적용			
납세조항	전액	해당 납세조항에 의하여 원천징수 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3%를 세액공제			
주택자금 차입금이자	전액	'95.11.1. ~ '97.12.31. 취득)주택자금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의 30% 세액공제 ※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외국납부세액	한도내 전액	거주자의 외국소득세액을 당해연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 공제한도 = 근로소득산출세액 × (국외근로 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			
월세액	연 150만원 (170만원)	총급여액 8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초과자 제외)의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원 가능)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4억 이하 주택(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액(연 1,000만원 한도)의 15%를 세액공제 ※ 총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자 제외) 17%			